

#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

의안 번호	4550
----------	------

제출연월일 : 2026. 3. 6.

제 출 자 : 서구청장

## 1. 제안이유

- 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상위 법령의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약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사무의 사업대상지역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조합 사업 운영의 기준을 정립하고, 조합원이 별도의 수거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이를 반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다.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조합장 선임방법에 관한 규약 내용을 개정하여,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부 개정된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76조 및 제181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규약」 제1조(목적) 및 제19조(조합의 해산)에 인용된 상위 법령 근거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
- 나. 「규약」 제5조(조합의 사무 등) 사업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개정
- 다. 「규약」 제12조(조합장) 조합장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구 분		현 행	개정안
제1조 (목적)	설립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법」 제159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법」 제176조</li> </ul>
제5조 (조합의 사무 등)	사업대상 지 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합원의 행정구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합원의 행정구역 (단, 조합원이 별도 수거 체계를 마련할 경우 사업 대상지역에서 제외)</li> </ul>
제12조 (조합장)	선 임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합장은 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하여 선발한다. (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선발 채용일 전까지는 현행 선임방법에 따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합장은 동구, 대덕구, 중구, 유성구, 서구 순으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추천한 자를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li> <li>조합회의 의결에 따라 경력 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 하여 선발할 수 있다.</li> </ul>
	임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합장의 임기 및 자격요건, 채용시기, 임금 등은 ‘행정 기구 설치 및 정원규정’ 으로 정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구 공무원 선임의 경우) 2년 / 단, 공무원 추천 방식 으로 조합장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은 파견 기간을 고려하여 조합장 임기를 2년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li> <li>(경력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선발의 경우) 「조합장 인사관리 규정」 에 따름</li> </ul>
제19조 (조합의 해산)	해산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법」 제164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법」 제181조</li> </ul>

### 3. 참고사항

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 개정안 및 전문 1부.

나. 관계법령 발췌 1부.

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76조(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설립)
- 「지방자치법」 제181조(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규약 변경 및 해산)
-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제1조(목적)
-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제5조(조합의 사무 등)
-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제12조(조합장)
-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제19조(조합의 해산)

라.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마.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 개정안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6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생활 폐기물의 수집·운반업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중심의 폐기물처리 체계 유지를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조합의 사무 등)**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사무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무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조합원이 합의하여 조합에 위임한 사무
4. 기타 조합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조합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사업대상지역은 조합원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단, 조합원이 별도의 수거체계를 마련한 경우 사업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조합장) ① 조합에는 조합장을 두며, 조합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공무원 추천 방식으로 조합장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은 파견기간을 고려하여 조합장 임기를 2년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조합장은 동구·대덕구·중구·유성구·서구 순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추천한 자를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 ③ 조합장은 조합회의의 의결에 따라 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발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조합장을 선발하는 경우, 조합장의 임기, 자격요건, 임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장 인사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 ⑤ 제3항의 조합장 선발 채용일 전까지는 제2항에 따라 조합장을 선임한다.
- ⑥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조합의 해산) 법 제181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원소속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복귀하고, 그 재산의 처분은 조합원의 협의에 의한다.

## 부 칙

이 규약은 대전광역시시장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9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시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중심의 폐기물처리 체계 유지를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5조(조합의 사무 등)</b>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사무</li> <li>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무</li> <li>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조합원이 합의하여 조합에 위임한 사무</li> <li>4. 기타 조합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li> </ol> <p>② 조합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p> <p>③ 사업대상지역은 조합원의 행정 구역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u>제176조</u>의 규정에 따라 대전시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중심의 폐기물처리 체계 유지를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사업대상지역은 조합원의 행정 구역으로 한다. <u>단, 조합원이 별도의 수거체계를 마련한 경우 사업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u></p>

현행	개정안
<p><b>제12조(조합장)</b> ① 조합에는 조합장을 두며, 조합장의 임기 및 자격요건, 채용시기, 임금 등 관련사항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규정」으로 정한다.</p> <p>② 조합장은 경력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하여 선발한다.</p> <p>③ 제2항의 조합장 선발 채용일 전까지 조합장은 동구, 대덕구, 중구, 유성구, 서구 순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p> <p>④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통할한다.</p> <p><b>제19조(조합의 해산)</b> 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원소속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복귀하고, 그 재산의 처분은 조합원의 협의에 의한다.</p>	<p><b>제12조(조합장)</b> ① 조합에는 조합장을 두며, <u>조합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공무원 추천 방식으로 조합장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은 파견기간을 고려하여 조합장 임기를 2년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u></p> <p>② 조합장은 동구·대덕구·중구·유성구·서구 순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추천한 자를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p> <p>③ 조합장은 <u>조합회의의 의결에 따라 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발할 수 있다.</u></p> <p>④ 제3항에 따라 조합장을 선발하는 경우, 조합장의 임기, 자격요건, 임금 및 <u>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장 인사관리 규정」으로 정한다.</u></p> <p>⑤ <u>제3항의 조합장 선발 채용일 전까지는 제2항에 따라 조합장을 선임한다.</u></p> <p>⑥ (현행 제4항과 같음)</p> <p><b>제19조(조합의 해산)</b> 법 <u>제181조</u>의 규정에 따라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원소속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복귀하고, 그 재산의 처분은 조합원의 협의에 의한다.</p>

#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6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중심의 폐기물 처리 체계 유지를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의 명칭) 이 조합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조합의 구성) 조합은 대전광역시 5개 구(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를 구성원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조합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천로 361-3 (탑립동)'에 둔다.

제5조(조합의 사무 등)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사무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무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조합원이 합의하여 조합에 위임한 사무
4. 기타 조합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조합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사업대상지역은 조합원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단, 조합원이 별도의 수거체계를 마련한 경우 사업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 제2장 조합회의

제6조(구성 및 자격) ① 조합에는 조합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조합회의를 둔다.

② 조합회의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각 조합원 소속 부구청장 5인
2. 조합원이 추천한 자치구 의회 의원 5인

④ 제3항 제1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2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그 위원이 속해있던 조합원이 추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의장과 부의장) ① 조합회의에 의장과 부의장을 둔다.

② 의장은 동구, 대덕구, 중구, 유성구, 서구 순으로 소속기관의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차기 의장 소속기관의 부구청장으로 하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조합회의를 대표하며 조합회의를 관장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의 궐위 또는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조합회의 의결사항) 조합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조합규약의 개정안
2. 조합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조합의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4.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조합원별 사업비 분담기준의 결정
5. 예산의 심의·확정과 결산의 승인
6. 결산검사를 위한 감사위원의 선임
7. 조합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8. 기타 조합운영과 관련한 주요한 사항

**제9조(조합회의의 운영)** ① 조합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매년 하반기 중에 개최한다.
- ③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의 2/3이상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④ 조합회의는 안건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조합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합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행정사무감사)** ① 조합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조합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 ② 제1항의 행정사무감사는 3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조합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③ 조합회의는 조합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3장 집행기관

- 제12조(조합장) ① 조합에는 조합장을 두며, 조합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공무원 추천 방식으로 조합장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은 파견기간을 고려하여 조합장 임기를 2년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조합장은 동구·대덕구·중구·유성구·서구 순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추천한 자를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 ③ 조합장은 조합회의의 의결에 따라 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발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조합장을 선발하는 경우, 조합장의 임기, 자격요건, 임금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장 인사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 ⑤ 제3항의 조합장 선발 채용일 전까지는 제2항에 따라 조합장을 선임한다.
- ⑥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통할한다.

- 제13조(사무기구) ① 조합에는 조합 및 조합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둔다.
- ② 사무직원은 각 조합원이 파견한 공무원과 조합에서 채용한 직원으로 구성한다.
- ③ 조합의 사무기구와 정원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4조(사업인력) ① 조합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투입되는 사업인력을 둔다.
- ② 사업인력에 대한 운영은 조합의 환경사업 운영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 제4장 재 무

**제15조(경비부담)** ① 조합의 경비는 조합원의 분담금, 정부 지원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

② 분담금은 대전광역시 각 조합원 행정구역의 생활폐기물 처리 비율로 분담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조합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구체적인 사업비 분담 기준은 조합회의에서 정한다.

**제16조 (예산편성 및 집행)** ① 조합장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전 조합회의에 제출하고 조합회의는 이를 심의·확정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조합원인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재무회계,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예산편성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결산)** ① 조합장은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조합회의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조합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때에는 승인을 얻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은 2인 이내로 하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동산 및 부동산의 처분 등) 조합 소유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합의 재무회계 및 물품관리 규정에 따라 처분하며, 필요시 조합원인 조합원의 협의에 의한다.

## 제5장 해산 등

제19조(조합의 해산) 법 제181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원소속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복귀하고, 그 재산의 처분은 조합원의 협의에 의한다.

제20조(기타) 이 규약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규약은 대전광역시장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176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177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과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③ 관계 지방의회의원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3조제1항과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염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지방자치법」 제109조(겸임 등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

1.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영업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6. 교원
  7.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 중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178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① 지방자치단체 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의결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제156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대표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를 총괄한다.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7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
2.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사무소의 위치

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5.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
6. 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
7.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0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감독)** ① 시·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81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7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